【 주간포커스 】

금융회사 지배구조 논의

이승준 연구위원

기업지배구조원이 2010년 11월 26일 주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활발해지고 있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논의의 연장선에서 최근 불거진 금융회사의 CEO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분산된 소유구조 하에서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은행 및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 CEO와 사외이사 추천·선임을 위한 상시적 이사추천위원회 및 지원조직의 설치와 CEO 교체·승계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임원 등의 보상정책을 결정할 보상위원회의 의무화와 일정 규모 이상 보수의 개인별 공시를 통해 CEO 등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소유구조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과 CEO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도 제시되었다.

□ 지난 11월 26일 금융투자협회에서「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연구」세미나가 기업지배구조연구원 주최로 개최되었음.

o 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금융연구원이 주최한「금융회사 경영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최근 불거진 은행의 CEO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개선방안을 개진

□ 연구의 주요 내용은 CEO와 사외이사의 추천·선임 및 CEO의 교체·승계 시스템 개선방안, CEO를 비롯한 경영진 보수에 관한 개선방안,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개선방안, CEO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 강화방안 등임.

o 이 밖에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강화방안도 제안

□ 이번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분산된 소유구조 아래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여겨지는 은행 및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임.

o 지난 6월 공청회에서 제시된 바 있는 금융업권별 소유구조 차이에 따른 차별적인 지배구조의 필요성을 반영

o 또한 최근 여론의 관심을 많이 받은 바 있는 은행권의 CEO 리스크를 지배주주의 부재에서 오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

o CEO와 사외이사의 추천·선임 및 CEO의 교체·승계 시스템 개선방안과 CEO를 비롯한 경영진 보수에 관한 개선방안은 기본적으로 은행 및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에 적용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

□ 구체적으로 금융회사 이사회 내에 상시적 기구로서 전원(또는 과반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CEO 및 사외이사 후보군을 탐색하고 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함.

o 그동안 CEO 선임과정의 외부 영향력 행사, CEO에 의한 경영권 고착화, CEO의 승계 및 교체 시스템 부재와 사외이사 추천과정에서 경영진의 영향력 행사 등 문제점 대두

o 또한 이사추천위원회를 보좌하는 별도의 상설 지원조직을 두어 CEO 및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한 상시적인 탐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

o 이 밖에 임원선임 등 주요안건은 주주총회 개최 4주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장기연임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CEO 및 이사의 3연임부터는 주총결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안

□ 또한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회사 임원 등의 보상정책 전반에 대해 결정하도록 하는 등, 경영진의 과도한 리스크 및 단기성과 추구를 제어할 방안 제시

o 다만, 이사추천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동 위원회가 보상위원회의 역할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

o 이 밖에 일정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영진 및 특정직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경영진 변동보상의 상당부분을 수년간 이연지급 하도록 하며, 목표한 재무성과에 미달 또는 손실 발생 시 미래이연지급액을 축소하도록 제안

□ 모든 금융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요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는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제도 개선방안과 CEO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강화 방안이 있음.

o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여 주로 회계감사와 사후적 통제를 담당하고, 내부통제인이 준법감시 및 내부통제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
- 이를 위해 내부통제인의 지위를 집행임원 이상으로 정하고 감독기관 경력자 등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내부통제인을 지원하는 조직에 대한 규정을 마련
- 모든 금융권역에 내부통제인과 감사위원회의 권한, 역할, 책임에 관한 모범규준 제정을 권고하되, 필요시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

o 또한 감독당국이 CEO 및 임원에 대해 사전적 적격성 심사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 자격요건을 판단하도록 하며, 그 적용대상도 현행 "임원"에서 "주요 임직원"으로 확대

□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은행 등 지배주주가 없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지배주주가 있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o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경영진에 대한 모니터링 부재로 인한 문제점은 완화될 수 있으나, 대주주의 적격성과 소액주주 보호 등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

o 보험산업의 경우, 선임계리사의 역할 등 다른 금융권과 구분되는 지배구조의 특수성과 함께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상의 공통점도 존재하므로 보험회사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 KiRi.